

# 工業所有權審判事例

(國) (內) (事) (件)

## 拒 査 定

<大法院 第5部 判決>(1980.6.24)

裁判長: 大法院判事 김 용 철

關與法官: 임 항 준 · 김 기 흥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: 다이아몬드 삼탁크 Corp.

代表 S.T. 코박크스(美國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市)
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: 特許廳長

3. 原審決: 特許廳 1979.4.30字 1978年 抗告審判(절) 第196號 審決

4. 主文: 原審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還送한다.

### 5. 理由

上告人の代理人等의 上告理由를  
綜合하여 判斷한다.

原審決理由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인이 出願한 商標(이하 本願商標  
라함)가 우리나라 来來社會의 通念  
에서 本願商標의 圖形을 보면 3個의  
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 것이  
보통일 것이고 본원상표의 도형 右  
側에 2段으로 表示된 文字中 그 下  
端에 표시된 Shamrock라는 英語單  
語를 보고 토키풀이라고 생각할 우  
리나라의 需要者는 거의 없을 것이  
므로 본원상표를 先出願에 의한 他人  
의 登錄商標인 Three Diamonds  
와 全體的으로 對比하여 보면 兩商  
標는 “세개의 다이아몬드”라는 점  
에서 觀念이 類似하여 수요자로 하  
여금 商品出處의 認認混同을 일으  
킬 念慮가 있다는 趣旨로 判示하여  
본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拒絕查  
定한 措置가 正當하다는 취지로 판  
단된다.

本件에서 본원상표와 引用商標를

비교할때에 3個의 다이아몬드가 各  
構成의 一部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 
서 관념이 유사한바 있다 하더라도  
그리고 그 外觀稱呼의 점에서도 觀  
察하여 위 두 상표가 果然 전체적  
인 관계에서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  
여금 商品去來에 있어서 오인 혼동  
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의 與否를  
判斷하여야 할 것이고 또 본원 상표  
의 도형 우측에 2단으로 표시된 문  
자 중 그 하단에 표시된 영문자가 原  
審設示와 같이 우리나라 수요자가  
쉽게 그 意味를認識하기 어려운 文  
字라고 하더라도 이 部分이 본원상  
표를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관찰할  
때 除外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할  
것이니 결국 3개의 다이아몬드라는  
점에서 관념이 유사하다는 것만으  
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  
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審理  
未盡, 理由不備 내지 상표의 유사  
여부 판단에 관한 法理誤解 등의 違  
法이 있고 이는 審決結果에 影響을  
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論旨는 이유

있어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 
원심결을 파기, 환송하기로하여 주  
문과 같이 판결한다.

### 一參考一

#### 抗告審

1978년 항고심판(절) 제196호  
항고심판 청구인: 다이아몬드 삼  
탁크 Corp. 대표이사 S.T. 코박크스  
(美國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市)

代理人: 차준영

1976년 商標登録出願 제6321호 拒  
絕查定不服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  
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.

主文: 본건 항고심판청구는 成立  
할 수 없다.

